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법인 이사장 소관 업무 관련 소송 비용 등의
교비회계 사용 금지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020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학교법인 이사장 소관 업무 관련 소송 비용 등의 교비회계 사용 금지 ..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2. 25.
3.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진출·대여를 금지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비회계는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다수의 사립학교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어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되,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3조).

Ⅲ. 검토의견

1. 학교법인 이사장 소관 업무 관련 소송 비용 등의 교비회계 사용 금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3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u>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u>제29조제6 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u> 위반한 경우에는	제73조(벌칙) ----- ----- ----- -----제29조 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제5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음.

[학교법인 회계 구분]

학교법인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교비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교비회계의 엄밀한 관리를 위하여 세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법인의 수입으로,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규정함.

[교비회계의 세입과 세출]

세입	세출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또한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9조제6항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교육용 기본재산 무상 귀속 등 외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이를 위반한 경우 제7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에서 특히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¹⁾

□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행법 규정에 더하여 제29조제7항에 교비회계를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73조에 포함하여,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1)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도1336, 2025. 4. 24.) 참조

[교비회계 부정 사용 관련 현행법 및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교비회계 사용 금지사유 추가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u>다른 회계로 전출(轉出)·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⑦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u>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이나 자문 비용으로 교비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u>
벌칙 수정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u>제29조제6항</u> 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u>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비회계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시설 사용료 등의 재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 등을 지불하는 사례가 과도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경비까지 지불되는 사례²⁾가 있는 경우 현행법령에서 이와 같이 해당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2) 대법원은 총장인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는 표현이 담긴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 비용 등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8805, 2025. 4. 10.)

□ 다만,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관련하여 ‘모든 경우의 소송이나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원칙 확립에서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교비회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교비회계에서의 소송 비용 지출은 학교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일정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출 가능 여부는 소송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성격, 비용의 지출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³⁾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될 경우 학생의 장학금 등 학생의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즉 현행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규정하여, ‘학교장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교원 임용 등과 같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따른 소송 또는 자

3)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도1336, 2025. 4. 24.) 참조

4) 「사립학교법」

문 비용이 개정안에 따른 교비회계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비회계로 소송 또는 자문 비용을 지출한 것이, 교비회계를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면, 현행법 제29조제6항 및 제73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어 개정안과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나사렛대학교노동조합은 교비회계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수익이 없는 소규모 학교법인의 경우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함.

한편, 교육부, 사립대학법인협의회, 48개 대학법인,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에서는 학교 운영상 필수적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일부 예외를 인정하거나 지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와 같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의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과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9